

## 1. 개정이유

수난구호 관할해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민간구조세력의 수난구호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수당지급 기준, 유류비 지급기준 등을 조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수난구호 관할해역 표에 사천해양경찰서 개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1)

나. 수당 산정기준을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지급체계를 정비하고 유류 소모량 산출기준을 최신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유류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2)

다. 유류비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서식도 개정(안 별지 제6호의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남해광역구조본부의 통영란 다음에 사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해양경찰서)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위치 및 수난구조 관할해역** (제3조제1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 해역	소속 지역구조본부	
			명칭	위치
동해광역구조본부	강원도 동해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북위 40도 00분 동경 127도 58분 북위 40도 00분 동경 135도 00분 북위 37도 20분 동경 135도 00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31도 18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29도 27분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 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속초	강원도 속초시 (속초해양경찰서)
			동해	강원도 동해시 (동해해양경찰서)
			울진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해양경찰서)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해양경찰서)
남해광역구조본부	부산광역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북위 35도 39분 동경 129도 27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31도 18분 북위 35도 00분 동경 130도 00분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 북위 33도 12분 동경 128도 05분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북위 34도 42분 36초 동경 128도 00분 북위 34도 56분 20초 동경 127도 52분 26초 북위 34도 56분 38초 동경 127도 52분 25초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 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해양경찰서)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해양경찰서)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해양경찰서)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양경찰서)
			사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해양경찰서)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서해광역구조본부	전라남도 목포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북위 34도 56분 38초 동경 127도 52분 25초 북위 34도 56분 20초 동경 127도 52분 26초 북위 34도 42분 36초 동경 128도 00분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북위 33도 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북위 33도 56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4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2도 14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1도 00분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5도 36분 북위 36도 09분 동경 125도 36분 북위 36도 09분 동경 126도 01분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01분	완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해양경찰서)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27분 북위 36도 02분 21초 동경 126도 35분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 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부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해양경찰서)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해양경찰서)
중부광 역구조 본부	인천광역시 (중부지방해 양경찰청)	북위 40도 00분 동경 121도 50분 북위 40도 00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1도 00분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5도 36분 북위 36도 09분 동경 125도 36분 북위 36도 09분 동경 126도 01분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01분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27분 북위 36도 02분 21초 동경 126도 35분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 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보령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해양경찰서)
			태안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해양경찰서)
			평택	경기도 평택시 (평택해양경찰서)
			인천	인천광역시 (인천해양경찰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해양경찰서)
제주광 역구조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지방해양 경찰청)	북위 32도 14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0도 00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0도 00분 동경 125도 25분 북위 32도 30분 동경 127도 30분 북위 33도 12분 동경 128도 05분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북위 33도 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북위 33도 56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4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 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해양경찰서)

비고: 지역구조본부의 관할해역은 해당 지역구조본부가 설치된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의 지급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출동수당

가. 활동비: 1명당 1일 1회에 한정하여 활동시간(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시간부터 임무 종료 후 복귀한 시간) 및 시간급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1) 기본수당(활동시간 8시간 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
- 2) 초과수당(활동시간 8시간 초과): 시간급 최저임금액 × 초과 활동시간

나. 유류비: 동원 선박 및 항공기의 유류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지원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유류비 지급을 받는 경우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선박: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가) 유류소모량: 인정유류소모량과 동원 선박이 제출한 유류소모량을 비교하여 적은 양으로 한다.

※ 인정유류소모량 산출기준

유 종	산출기준
경유	활동시간×마력×0.118리터
휘발유	활동시간×마력×0.209리터
BA·BB유	활동시간×마력×0.106리터

나) 유가

(1) 어선: 매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

(2) 어선 이외의 선박: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 및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BA·BB유의 경우 선박용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

2) 항공기: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가) 유류소모량: 항공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유류소모량

나) 유가: 한국석유공사 공시가 또는 실거래가 중 낮은 금액

다. 여비: 운임(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의 구분 제2호에 따른다.

## 2. 교육·훈련수당

### 가. 교육수당

1) 대면 참여: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단, 4시간미만 참여한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 4시간)

2) 비대면 참여: 시간급 최저임금액 × 교육 시간(8시간 이내 인정)

나. 훈련수당: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

※ 교육·훈련수당은 1명당 1일 1회에 한정하여 총 교육·훈련 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 유류비: 훈련에 동원된 선박 및 항공기의 유류사용에 대하여 상기 출동수당의 유류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라. 여비: 운임(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의 구분 제2호에 따른다.

